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CONTENTS

01	표준계약서 지침 개요	04
	I 지침의 목적	
	II 지침의 내용	

02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08
	I 취지	
	II 조항별 해설 및 가이드	

03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34

- I 취지
- II 조항별 해설 및 가이드

04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및 육성군 표준 부속합의서 60

- I 취지
- II 조항별 해설 및 가이드

05 부록 76

- I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 II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 III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



01

표준계약서

지침 개요

I 지침의 목적

II 지침의 내용

01. 표준계약서 지침 개요

I 표준계약서 지침의 목적

- ☑ 표준계약서는 법률적 용어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법과 친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읽었을 때, 해당 조항에 대한 취지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표준계약서 지침을 통해 표준계약서 조항의 취지를 설명하고, 해당 조항을 변형할 수 있는 선택예시를 제공하고, 선수 혹은 게임단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써야 하는 부분에 대한 해설과 안내를 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 선수 혹은 게임단 양측에서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악용 혹은 오용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 표준계약서를 통해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II 표준계약서 지침의 내용



조항

표준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해설

조항의 취지와 목적, 기타 필요한 설명입니다.



추가 및
변경

실제 계약시 조항 변경의 예시, 추가할 수 있는 내용 등입니다.



선수
주안점

해당 조항에서 특히 선수가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게임단
주안점

해당 조항에서 특히 게임단이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02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I 취지

II 조항별 해설 및 가이드

02.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I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의 취지

- ☑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는 선수와 게임단이 좋은 대회 결과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 ☑ 선수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게임단의 지시에 따라 훈련에 성실히 임해 좋은 성적을 내고 각종 선수활동을 수행하면 됩니다.
- ☑ 게임단은 선수에게 후원금(연봉)과 환경(기숙사, 전자기기 등 물리적인 내용 뿐 아니라 코칭 및 매니지먼트 등을 포함합니다.)을 제공해 선수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 선수는 후원금과 환경을 제공받아 선수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게임단은 선수의 대회 성적을 통해 게임단의 위상을 높이고 선수에게 일시적으로 양도받은 권리를 통해 새로운 BM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II 조항별 해설 및 가이드



조항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선수가 이스포츠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하고 게임단은 이에 대한 대가로 후원금 등 금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권리 및 의무를 정하고, 게임단과 선수 상호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해설

- 계약의 목적으로서 이하의 모든 내용들은 이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세부 조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선수는 선수활동을 제공하고, 게임단은 후원금 등 금품을 지급하는 관계라는 내용이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및 변경	 선수 주안점	 게임단 주안점	해당없음
---	--	---	------

 조항	<h3 style="text-align: center;">제2조 (정의)</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1호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뜻한다. ② “종목사”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종목선정 기관에 의해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에 따라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된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혹은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 및 제2조1항에 의거해 이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 혹은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를 뜻한다. ③ “대회” 및 “대회주최자”란 종목사 혹은 종목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가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되어있는 게임물 및 이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임물을 통해 경기를 주최하는 행위와 해당 행위의 주체를 뜻한다. ④ “게임단”이란 종목사 등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스포츠 선수를 모집하여, 이스포츠 선수에게 각종 환경과 관리를 제공하는 주체를 뜻한다. ⑤ “이스포츠 선수”란 종목사 등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게임단에 소속되어 경기에 출전하는 주체를 뜻한다.
---	---

 해설	각종 단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	------------------

 추가 및 변경	 선수 주안점	 게임단 주안점	해당없음
---	--	---	------



조항

제3조 (계약 기간 및 적용범위)

- ① 계약의 기간은 _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_년 __월 __일까지 _____일간으로 한다.
- ②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상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되지 않은 게임물에 관하여 이 계약서 제2조의 각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계약서의 내용을 적용한다.
- ③ 종목사가 대회 규정, 게임단 최소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약관 혹은 계약을 규정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혹은 계약이 우선한다.



해설

- 한국e스포츠협회의 정식 종목사가 아닌 종목이어도 사용 가능한 표준계약서입니다.
- 종목사의 대회약관 등이 존재하고 본 계약서와 내용이 충돌하게 될 경우 종목사의 약관이 우선한다는 내용입니다.
- **예시** LoL의 경우 라이엇코리아가 규정하는 최저연봉 이하로 계약을 진행하게 될 경우 계약은 무효화 되거나 대회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 및 변경

해당없음








선수 주안점

이스포츠 선수로서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종목사의 규정 등에 대해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사는 대회 약관 및 규정 등을 공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찾아보고 계약서와 상충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게임단 주안점

종목사 약관에 위배되면 종목사에 따라 대회참가 및 게임단 운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 대회 및 종목사 약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p>조항</p>	<h3 style="background-color: #f8d7da; padding: 5px;">제4조 (선수활동의 범위)</h3> <p>① 선수의 선수활동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게임단과 약정한 각종 이스포츠 대회참가 2. 게임단과 약정한 훈련참가 3. 게임단과 약정한 스트리밍, 광고 및 미디어 출연, 콘텐츠 제작 등 영리활동 4. 게임단과 약정한 게임단 운영의 부대활동. 단 게임단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 게임단의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한다.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선수활동 범위는 게임단과 선수가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의 활동에 대한 정의입니다. 크게 대회참가, 훈련, 영리활동, 부대활동으로 나누어집니다. • 본 계약서 상 게임단은 선수에게 선수 활동을 요구할 수 있는데 어떤 범주까지 요청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한 것입니다.
 <p>추가 및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활동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 변경하여 계약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부대활동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 변경하여 계약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대회참가 및 훈련활동과 동떨어진 사례를 추가할 경우 불공정 조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예시 게임단 관련자와의 사적인 활동 등은 부대활동으로 간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p>선수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단이 선수에게 요구할 수 있는 선수활동은 기본적으로 대회, 훈련, 영리, 부대 활동이며 모든 활동은 대회 혹은 훈련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게임단에서 대회나 훈련과 별다른 상관이 없는 활동을 지시할 경우 본 계약 기준으로는 지시에 따른 의무가 없습니다.
 <p>게임단주안점</p>	<p>게임단의 공식적인 활동 외에 게임단 간부 및 종사자가 개인적으로 선수에게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선수에게 선수활동 외의 내용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 요청이 강요로 비추어 질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계약 위반 사항이 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p>



조 항

제5조 (게임단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 ① 게임단은 선수에 대하여 제4조 제1항의 선수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게임단은 선수에게 선수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후원금,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그 외 영리 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구성된다.
- ③ 게임단은 선수가 경기와 대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게임단은 선수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1. 허용되지 않는 경기력 향상 약물의 복용
 2. 승부조작, 이스포츠 관련 도박, 어뷰징(고의패배 등 인위적 승점조작), 대리게임 등과 같이 경기 및 이스포츠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3. 기타 선수 개인과 게임단의 품위 훼손 등 이스포츠 관련 종사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해 설

- 게임단에서 할 수 있는 내용과 해야하는 내용들에 대해 작성된 조문입니다.
- 게임단은 앞서 이야기한 선수활동을 요구(지시)할 수 있으며, 선수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 선수가 경기와 대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훈련환경, 기숙환경 등)과 관리(코칭 및 외부 매니지먼트 등)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사회 통념상 스포츠에서 허용되지 않는 약물, 승부조작 등을 선수에게 지시해서는 안됩니다.



추가 및 변 경

- ③항에서 특정 장비의 사용, 기숙 여부 등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변화 혹은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 예시 부속합의서에서 선수는 게임단이 제공하는 훈련장비를 사용한다.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선수
주안점

- 계약을 통해 게임단은 선수에게 선수활동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본 계약에 위배됩니다.
- 게임단에서 지시하는 대회, 훈련, 영리, 부대 활동에 대해 성실하게 참여해야 하며, 다만 앞서 이야기 한 부당한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게임단
주안점

- ① 항은 선수활동에 대한 지시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조항이 됩니다. 다만 대회 혹은 훈련과 관련이 적은 부당한 형태의 지시는 계약상 위반사항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조 항

제6조 (선수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 ① 선수는 게임단에게 약정된 후원금,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 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게임단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 신체적 침해라고 생각되는 경우 게임단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선수는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1항의 선수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게임단과 협의되지 않은 선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허용되지 않는 경기력 향상 약물의 복용
 2. 승부조작, 이스포츠 관련 도박, 어뷰징(고의패배 등 인위적 승점조작), 대리게임 등과 같이 경기 및 이스포츠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3. 기타 선수 개인과 게임단의 품위 훼손 등 이스포츠 관련 종사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⑥ 선수는 계약기간 중 게임단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와 이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게임단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선수는 선수활동 시 게임단에서 제공 혹은 지시하는 유니폼을 착용 혹은 사용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게임단 주안점

현재 게임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니폼 부착 광고 등을 유니폼 착용 조항으로 일반화했습니다.



해설

- 선수의 기본적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 선수활동에 대한 금품 지급 요청, 부당한 행위에 대한 거부, 훈련 및 훈련설비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이 선수의 일반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선수는 대회, 훈련, 영리, 부대 활동에 있어서 게임단과 미리 상의하지 않은 활동이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선수활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게임단과 상의 후 참가 및 활동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다만 개인적인 활동까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⑤의 1.의 약물은 체육진흥법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는 게임단과 선수 사이의 사적 관계이므로 탄력적으로 책임을 묻거나 면책이 가능하도록 조문은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유관기관 등에서 이스포츠허스의 독자적인 도핑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⑥은 통칭 템퍼링에 관한 내용으로서 본 계약기간 동안에는 다른 게임단 등과 접촉해 선수 계약을 맺거나 이에 대해 논의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입니다.
- 템퍼링은 본인 뿐 아니라 게임단 내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도 계약관련 소식을 전하거나 대신 계약을 진행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됩니다.



추가 및
변경

⑤항에서 게임단의 특색이나 종목의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과도하게 선수를 강압하거나 자율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판별될 수 있습니다.



선수
주안점

- 템퍼링, 즉 계약 중간에 다른 게임단 등과 계약을 준비하거나 체결하는 행위는 현대 스포츠계에서 금기시 되는 사항으로 전속 계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입니다. 본인 뿐 아니라 동료 선수들의 계약 관련된 내용도 전달하거나 진행시켜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순간적인 집중력 향상 등에 도움이 된다는 제품이 허용되지 않은 약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제품의 사용은 게임단과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 승부조작과 관련 도박은 고의패배뿐 아니라 퍼스트킬, 첫 아이템 구입, 첫 스킬 사용 등 경기 내의 모든 행위에 해당합니다. 혹여 금전을 제공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유혹이 있을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되며 게임단 및 법조인과 상담해야 합니다.
- 품위 훼손, 명예 훼손 등은 게임 내부에서의 욕설, 고의적인 방해(트롤링), 차별 및 혐오발언 등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 채팅 한번에 종목사와 게임단의 제지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음을 잊으면 안됩니다.



조 항

제7조 (후원금)

- ① 게임단은 본 계약기간 동안 선수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별지]에서 합의한 후원금을 지급한다. 게임단과 선수는 후원금의 액수, 조건부 후원금지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 후원금이 복수의 지급사유로 구성될 경우의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② 게임단은 선수에게 후원금을 [별지]에서 정한 지급일에 균등·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건부 후원금지급이나 지급사유가 다른 후원금은 각 조건이나 지급사유를 기준으로 하여 균등·분할 지급한다.



해 설

- 통칭 연봉이라고 부르는 후원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 조건부 후원금은 옵션조항 및 인센티브 등을 뜻합니다.
- 복수의 지급사유는 정기후원금(월급), 상금, 옵션 등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추가 및 변 경

- 조건부 후원금(옵션 및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때 수당의 조건과 지급방법, 지급시기를 명시해야 합니다.
- 예시 출장수당, 승리수당, 연승수당, 주요대회 진출 수당, 주요대회 목표치 달성수당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선수
주안점

- 후원금은 연봉이라고 부르는 정기 후원금과 옵션 혹은 인센티브라고 부르는 조건부 후원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정기 후원금은 매월 일정한 날자를 지정하여 본인 혹은 보호자의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으며, 관례적으로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휴일 다음날 혹은 전날 입금되기도 합니다.
- 옵션조항은 게임단의 특성과 운영방침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상 옵션조항이 존재하면 상대적으로 정기 후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으므로, 옵션조항 대신 정기 후원금을 더 받는 경우가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옵션조항은 금액 뿐 아니라 지급일 역시 부속 합의서에 명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옵션조건 달성 후 1개월 이내 지급, 혹은 다음번 후원금 지급일에 합산지급 등)



게임단
주안점

- 후원금의 지급은 본 계약에서 게임단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의 미지급, 지연지급 등은 선수 사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후원금 지급일과 지급금액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 조건부 후원금은 선수의 동기부여 및 성취감 등을 고취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단의 행정처리업무가 증가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제8조 (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



조 항

- 1 선수가 속한 선수단이 대회에 참여하여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목사나 대회 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2 종목사나 대회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게임단은 상금 수령액 총액 중 [별지]에서 합의한 비율에 따른 금원을 선수에게 지불한다. 상금을 수령해야 할 선수가 1인이 아닌 경우, 선수들 사이의 분배 비율은 게임단과 선수단이 별도로 정한다.



해 설

- 대회 입상시 발생하는 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적으로 종목사가 상금 분배에 대한 조항이 있으면 본 계약 이전에 종목사 약관에 따라야 합니다.
- 종목사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게임단과 선수(혹은 선수들)가 분배 비율을 협의해야 합니다.



추가 및 변 경

- 종목에 따라 선수 비율 대신 선수단의 비율로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선수단의 상금 비율을 균등하게($1/n$) 분배할지, 균등분배시 참여 선수만 균등분배할지, 로스터에 있었던 선수까지 분배할지 등은 세부적으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 수 주안점

- 대회 상금은 종목과 게임단에 따라 방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게임단 내에서 상금에 대한 방침은 선수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될 확률이 높으므로, 상금에 대한 비율이 낮거나 없다면 차라리 정기 후원금으로 포함시켜 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게임단 주안점

- 상금의 분배 비율은 옵션조항과 유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옵션과 마찬가지로 선수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다만 게임단의 BM중 하나일 수 있으므로 게임단의 규모와 성격, BM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9조 (영리활동)	
 조 항	영리활동의 직접적인 대가로 게임단이 수익을 얻는 경우, 게임단과 선수는 그 수익에 대하여도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해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단은 선수에게 영리활동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해당 활동에 대한 분배에 관한조항입니다. • 스트리밍 관련 수익, 광고(CM) 촬영, 방송 프로그램 출연, 굿즈 판매 등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스트리밍은 스트리밍 할당 시간, 스트리밍 중 광고, 스트리밍 중 발생한 후원금 등의 분배비율과 지급일을 상세히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른 영리활동의 경우에도 수익발생시 해당 분배비율과 지급일을 상세히 작성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및 변경	해당없음
 선 수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목과 게임단 성격에 따라 선수에게 정기 후원금을 제공하는 대신 선수를 활용한 다른 활동으로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 해당 활동들이 선수 적성에 잘 맞지 않는 사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게임단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활동은 게임단의 주요한 BM이 될수도 있지만, 선수의 성격에 따라 성적이나 집중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 선수와 맞지 않는 영리활동 등은 차해년도 계약 혹은 장기 계약에 부정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10조 (선수의 인성교육 및 건강 지원)



조 항

게임단은 선수가 선수로서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선수에게 선수활동에서 기인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선수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해 설

- 이스포츠 선수의 경우 나이가 어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주의한 언행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인성교육을 권유하는 조항입니다.
- 선수가 선수생활 중 부상 혹은 질병을 당했을 때 선수활동의 관리자인 게임단이 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추가 및 변 경

- 인성교육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등의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게임단 입단 시 인성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매년 계약 갱신시마다 인성교육을 받는다는 등 부속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선 수 주안점

- 이스포츠 선수는 대회 뿐 아니라 개인방송, 개인훈련, 팬 미팅 등에서도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팬들과 접촉하게 됩니다. 이때 부적절한 행동이나 언행(채팅)을 하게 될 경우 팬들이 이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목사에서 벌금, 출전금지 등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단 및 기타 기관에서 진행되는 인성교육이 선수생활 및 연봉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됩니다.
- 정당한 선수활동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있을 경우 게임단에 치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수활동이 아닌 개인적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게임단에게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선수활동 외의 일반 생활, 취미활동 등에서 부상을 당하여 부득이하게 은퇴를 선택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스포츠 선수도 육체적인 능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선수 생활 중에는 부상 및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스포츠 선수의 특성상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움직임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거북목, 허리디스크 등의 질환이 생기기 쉬우므로, 선수 개인의 건강과 선수생명의 연장을 위해 적극적인 건강 관리를 추천합니다.



게임단
주안점

- 선수들의 경우 나이가 어린 경우도 많고, 사회경험도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성인의 기준으로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이나 언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선수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언행은 선수의 손해이기도 하지만 게임단 입장에서도 손해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인성교육을 통해 부적절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선수가 선수활동 중 부상이나 질병에 당하게 될 경우 치료비 지원을 추천합니다.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선수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외적인 게임단 이미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항

제11조 (비용의 부담 등)

- ① 게임단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선수의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② 대회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게임단은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게임단과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해설

- 게임단은 선수에게 훈련과 대회 준비를 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 등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조항입니다. 다만 선수의 비용부담 동의하에 훈련 장비 등을 선수가 개별 구입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대회상금에 대한 선수 분배비율이 존재하거나 영리활동을 통해 선수가 받아야 할 금품이 있는 경우, 선수는 이에 대해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 금액과 비율의 산정 등 처리 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게임단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추가 및 변경

해당없음






선수주안점

- 훈련에 대한 비용은 숙소, 식사, 코칭스텝 비용 등을 뜻합니다. 게임단에서 이와 같은 비용을 선수에게 비용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다만 선수가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간식 등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회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해 선수가 가져가는 비용이 계약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정산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 후원금 등에 대한 내역 등 게임단 일반 경비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게임단주안점

상금 및 영리활동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정산내역을 선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p>조항</p>	<h3 style="background-color: #f8d7da; padding: 5px;">제12조 (지식재산권 등)</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게임단은 계약기간 중 선수와 관련하여 게임단이 선수의 본명, 게임상의 지칭명(ID 혹은 닉네임)을 포함한 선수의 모든 가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선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게임단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선수의 선수활동 또는 게임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게임단과 선수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게임단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게임단이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로부터 허락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게임단에서 당해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게임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수의 명예나 기타 선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단은 전속계약기간 동안 선수와 관련된 저작권 및 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권리는 계약 종료와 동시에 선수에게 반환됩니다. • 선수 초상권을 이용한 영상, 제작된 굿즈 등은 게임단에서 상당한 비용 및 인력투입을 통해 제작한 경우, 권리 보유 시기에 발생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보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계약 종료후 선수의 지식재산권을 과도하게 인정할 경우 제작된 저작물들을 선수에게 반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p>추가 및 변경</p>	<p>해당없음</p>
 <p>선수 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기간 중에는 게임단에서 선수의 이름, 아이디 등을 포함한 사진, 초상 등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 선수의 초상 등의 권리를 통해 만들어진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후 선수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스포츠의 특성상 팀 단위 영상, 팀 프린팅 굿즈 등이 선수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게임단과 다른 선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작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선수와의 협의를 통해 게임단이 권리를 보유할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 다만 이를 악용하여 선수 계약 이전에 과도하게 결과물을 생산하거나, 추후 선수의 초상권 등의 사용에 침해가 될 수 있는 결과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권리의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13조 (계약내용의 변경)

조항

이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게임단과 선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해설

기본적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은 문서를 통해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추가 및 변경

해당없음







선수
주안점

게임단에서 기존 계약에서 변경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동의해야 합니다. 구두로 계약된 내용은 추후 증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임단
주안점

기존 계약의 변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면에 의한 선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게임단과 선수의 관계상 강압 혹은 강요에 의해 해당 내용이 선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등에 의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p>조항</p>	<p>제14조 (권리 등의 양도)</p> <p>게임단은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수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선수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이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부양도에는 선수와의 권리의무관계는 양도인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함한다.</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의 임대 및 이적이 가능하다는 조항입니다. • 다만 종목사에서 선수의 임대 혹은 이적을 허용했을 때에 한정하며 종목사에서 금지한 경우에는 본 조항은 효력을 잃습니다. • 종목사에서 권리 양도에 대한 리그 규약 등을 제시할 경우 게임단과 선수는 해당 규약 하에서 권리 등의 양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p>추가 및 변경</p>	<p>해당없음</p>
 <p>선수 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와 이적은 선수에게 큰 기회일 수도 있고 불리한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선수에게 큰 영향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수의 의향을 확인하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해외로의 이적 등에는 해외 생활 환경, 통역, 계약조건의 유지 등 복잡한 사안들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p>게임단 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 협의 없이 구단의 의지로 이적이 가능한 타 스포츠는 해당 리그 내에서의 이적으로 한정합니다. 이스포츠는 국내 한정된 리그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약이 필요합니다. • 선수의 이적을 위해서는 선수의 대회 출전자리 보장, 게임단의 재정상황 악화 등 선수에게 그에 따른 이유와 혜택을 설명하고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게임단 영업 양도의 경우 상법상 영업 양도에 있어서 인적 설비의 개별적 동의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이스포츠 선수를 단순 영업상 인적 설비로 볼 것인지, 근로자로서의 명시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격성은 존중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유권해석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 효과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개별적 동의를 받을 것을 권장하나 영업 양도의 경우에는 포괄적 특약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항

제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 ① 게임단 또는 선수가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30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 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위반사항의 시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게임단과 선수는 계약상의 내용위반이 없는 경우에도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를 통해 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③ 게임단과 선수는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해설

- 게임단 혹은 선수가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선수의 경우 선수활동 지시 거부 등, 게임단의 경우 후원금 미지급 등)해지를 가능케 하는 조항입니다.
- 손해배상 등의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위반에 대한 시정 조건의 기간이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 사항의 조건과 현실적으로 개선에 필요한 시간은 개별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특히 기숙생활 등에서 성폭력, 성희롱 등의 성범죄는 선수와 게임단 임직원 상호간에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인지가 필요합니다.

추가 및 변경

해당없음



선수주안점

- 해당 조항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된 조항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며 30일의 시간을 소요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선수와 게임단 모두가 신의성실의 원칙(상호간에 계약을 최대한 지키는 것을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 및 해당 기간동안 선수생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를 권유합니다.



게임단
주안점

- 해당 조항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된 조항이므로, 조항을 악용하여 임의로 계약을 30일간 불이행해도 괜찮다는 유예조항이 아닙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당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기간을 마련하기 위해 30일의 권리 유예를 주는 조항입니다.
- 일반적으로 선수와 게임단의 관계는 게임단쪽이 다수의 선수와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약관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같은 상황이라면 게임단보다는 선수측의 불공정한 상황이 크게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 항

제16조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선수가 선수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명백히 선수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된다. 단 게임단은 선수에게 잔여 후원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해 설

조건에 따르거나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닌 계약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의 계약 종료입니다.

추가 및 변경

해당없음



선 수
주안점

선수활동 중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은퇴 혹은 선수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이 종료되며, 이때 선수는 게임단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계약에서 받기로 한 후원금 등의 권리도 사라지게 됩니다.



게임단
주안점

- 선수가 선수활동으로 인해 질병 상해 등 선수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이유로 계약을 종료할 경우 계약이 종료되며, 이때 선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잔여 후원금에 대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불가항력이 발생한 상황과 게임단의 대외적 이미지 등을 고려했을 때 일부 혹은 전부의 후원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제17조 (비밀유지)



조항

게임단과 선수는 이 계약의 내용 및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이 비밀유지의 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해설

- 선수와 게임단은 계약을 통해 혹은 계약기간 동안 알게 된 상호간의 비밀 사항을 제3자에게 비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은 상호간의 이익도모라는 계약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추가 및 변경

- 비밀 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게임단 재정상황, 운영상황, 게임 전략, 게임 훈련 방식 등







선수 주안점

- 게임단의 업무상의 비밀이란 재정상황, 운영방침 등 일반적인 회사정보 이외에도 경기의 전략 및 훈련방식 등 게임단에 소속되지 않았다면 몰랐을 모든 정보를 뜻합니다.
- 선수 입장으로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게임단 입장에서는 중요한 정보의 누설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는 해당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 특히 인게임 채팅, 방송중 언급 등 공개적인 상황에서는 보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언급을 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게임단 주안점

- 선수가 계약중 혹은 계약 이후에 게임단을 언급하여 게임단에 피해를 입힐수 있는 상황은 일반적인 조항 사항으로 제약하였으나 종목 혹은 게임단의 특징에 따라 부속합의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선수 비밀이란 계약기간 동안 알게된 선수의 약점 혹은 선수측의 손해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본 조항에서 규약하는 내용입니다.

 <p>조항</p>	<p>제18조 (분쟁해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선수와 게임단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이스포츠 공정위원회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의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결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약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계약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간에 제3자에게 판단을 맡기는 사례들입니다. • 먼저 이스포츠 중재위원회의 분쟁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1. 중재법에 따른 중재와 2.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즉 1. 중재와 2. 소송은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p>추가 및 변경</p>	<p>해당없음</p>
 <p>선수 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중재의 경우 상대적으로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므로 업계 정보나 통념들이 많이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업계 관행이 사회적으로 이해받기 어려운 경우 2. 소송이 나올 수 있습니다. • 2. 소송의 경우 업계 관행이 아닌 중립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지만, 소송에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현역 선수에게는 전성기를 소송으로 허비할 수도 있다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 대한 비용 등도 고려해야 될 대상입니다.
 <p>게임단 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중재의 경우 상대적으로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므로 업계 정보나 통념들이 많이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업계 관행이 사회적으로 이해받기 어려운 경우 2. 소송이 나올 수 있습니다. • 2. 소송의 경우 업계 관행이 아닌 중립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지만, 소송에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소송에 대한 비용과 행정적인 자원 소모 등도 고려해야 될 대상입니다.



조 항

제19조 (청소년의 보호)

- ① 게임단은 청소년인 선수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
- ② 게임단은 청소년인 선수와 계약할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본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③ 게임단은 청소년인 선수에게 과도한 시간에 걸쳐서 선수활동에 종사하게 할 수 없다.



해 설

청소년 부속합의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청소년 선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추가 및 변경

해당없음







선 수 주안점

- 민법에 따라 청소년(만19세) 이하의 선수는 계약을 위해서는 법적 보호자의 동기가 필요합니다.
- 법적 보호자의 동기가 없을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고 본 계약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보호자의 의사 및 인감 등을 위조하거나 동의없는 사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필히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게임단 주안점

- 민법에 따라 청소년(만19세) 이하의 선수는 계약을 위해서는 법적 보호자의 동기가 필요합니다.
- 법적 보호자의 동기가 없는 계약의 경우 법적으로 전면 취소가 가능하므로 보호자의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확인은 물론 가능하다면 보호자의 대면 계약을 권유합니다.
-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는 표준약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한 보호자의 동의뿐 아니라, 보호자에게 해당 계약에 대한 설명과 계약 내용에 이해했고 동의했다는 응답을 받기를 권유합니다.

 <p>조항</p>	<p>제20조 (부속 합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게임단과 선수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3조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p>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게임단과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부속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부속합의서는 본 계약의 취지에 벗어나거나 충돌하거나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 계약서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하여 게임단과 선수가 각각 서명날인(도장)한 뒤 각자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에 더해서 계약서 2부를 나란히 놓고 간인을 하기도 합니다.
<p>추가 및 변경</p>	<p>해당없음</p>
 <p>선수 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한부당 선수도장(사인) 하나, 게임단 도장(사인) 하나가 찍혀있어야 하며 각각 한부씩을 나눠가져야 합니다. • 계약서는 추후 문제 발생시 계약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이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p>게임단 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한부당 선수도장(사인) 하나, 게임단 도장(사인) 하나가 찍혀있어야 하며 각각 한부씩을 나눠가져야 합니다. • 계약서는 추후 문제 발생시 계약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이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03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I 취지






II 조항별 해설 및 가이드

03.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I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의 취지

- ☑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는 정식 이스포츠 선수를 지향하는 육성군 선수와 이스포츠 선수로서 적합한 기량과 잠재력이 존재하는지 평가기간이 필요한 게임단과의 이해가 맞아 발생한 지 위입니다.
- ☑ 육성군 선수는 게임단으로부터 훈련과 교육을 통해 이스포츠 선수로서의 기량을 높여 정식 이스포츠 선수로 계약하기를 희망하며, 게임단은 우수한 이스포츠 선수가 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예비 선수를 교육하고 훈련시켜 자신의 게임단 선수로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 육성군 선수는 게임단의 지시에 따라 훈련과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고 게임단 내부의 규칙(기숙생활 기본규칙, 훈련 및 개인연습 스케줄 등)을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스포츠 선수와 달리 육성군 선수는 상대적으로 지위의 보장이 어려우므로 빠르게 게임단에 적응하고 잠재력을 증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권유합니다.
- ☑ 게임단은 육성군 선수가 훈련 및 테스트에서 본인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특히 기숙 생활 등에 있어서 기본적인 의식주와 휴식 등 건강 관리에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육성군 계약은 이스포츠 선수 계약보다 약한 결속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선수로서 보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이스포츠 선수 계약을 체결하기를 권유합니다.

II 조항별 해설 및 가이드

 조항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선수가 이스포츠 선수로서의 잠재력과 기량을 증명하고, 게임단은 이스포츠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선수와 우선적인 선수계약을 할 기회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의무를 정하여, 게임단과 선수 상호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의 목적으로서 이하의 모든 내용들은 이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세부 조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선수는 선수활동을 제공하고, 게임단은 후원금 등 금품을 지급하는 관계라는 내용이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및 변경	 선수 주안점	 게임단 주안점	해당없음	



조 항

제2조 (정의)

- ①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1호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뜻한다.
- ② “종목사”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종목선정 기관에 의해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에 따라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된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혹은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 및 제2조1항에 의거해 이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 혹은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를 뜻한다.
- ③ “대회” 및 “대회주최자”란 종목사 혹은 종목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가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되어있는 게임물 및 이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임물을 통해 경기를 주최하는 행위와 해당 행위의 주체를 뜻한다.
- ④ “게임단”이란 종목사 등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스포츠 선수를 모집하여, 이스포츠 선수에게 각종 환경과 관리를 제공하는 주체를 뜻한다.
- ⑤ “이스포츠 선수”란 종목사 등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게임단에 소속되어 경기에 출전하는 주체를 뜻한다.



해 설

각종 단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추가 및
변 경



선 수
주안점



게임단
주안점

해당없음


조항

제3조 (계약 기간 및 적용범위)

- ① 계약의 기간은 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____일간으로 한다.
- ②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상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되지 않은 게임물에 관하여 이 계약서 제2조의 각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계약서의 내용을 적용한다.
- ③ 종목사가 대회 규정, 게임단 최소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약관 혹은 계약을 규정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혹은 계약이 우선한다.


해설

- 한국e스포츠협회의 정식 종목사가 아닌 종목이어도 사용 가능한 표준계약서입니다
- 종목사의 대회약관 등이 존재하고 본 계약서와 내용이 충돌하게 될 경우 중복사의 약관이 우선한다는 내용입니다.
- **예시** LoL의 경우 라이엇코리아가 규정하는 최저연봉 이하로 계약을 진행하게 될 경우 계약은 무효화 되거나 대회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 및 변경 해당없음


선수
주안점

이스포츠 선수로서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종목사의 규정 등에 대해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사는 대회 약관 및 규정 등을 공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찾아보고 계약서와 상충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단 육성군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는 종목사도 다수 있으므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게임단
주안점

종목사 약관에 위배되면 종목사에 따라 대회참가 및 게임단 운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 대회 및 종목사 약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단 육성군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는 종목사도 다수 있으므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조항

제4조 (선수활동의 범위)

- ① 선수의 선수활동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게임단과 약정한 훈련참가
 2. 게임단과 약정한 각종 이스포츠 대회참가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선수활동 범위는 게임단과 선수가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해설

- 선수의 활동에 대한 정의입니다. 크게 대회참가, 훈련참가 활동으로 나누어 집니다.
- 본 계약서 상 게임단은 선수에게 선수 활동을 요구할 수 있는데 어떤 범주까지 요청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육성군 선수는 기본적으로 기량을 발전시키고 테스트 하는 지위이므로 육성군 선수를 통해 영리행위를 하는 사례는 지양되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 맞습니다.
- 다만 선수와 게임단의 협의를 통해 영리행위 등도 가능합니다.



추가 및 변경

- 부속합의서를 통해 영리활동 등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 변경하여 계약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이스포츠 선수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영리활동, 부대활동 등. 다만 이스포츠 선수 계약에 나와 있듯이 대회 참여 등과 밀접한 부대활동만 가능합니다.



선수주안점

- 게임단이 선수에게 지시할 수 있는 선수활동은 기본적으로 대회참여와 훈련뿐입니다. 이는 육성군 선수의 취지상 능력의 개발과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지, 영리활동 등의 행위는 정식 선수계약 이후에 진행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 게임단에서 대회나 훈련과 별다른 상관이 없는 활동을 지시할 경우 본 계약 기준으로는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게임단주안점

- 육성군 선수의 기본 취지는 선수 기량 제고와 테스트입니다. 육성군 선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영리활동 등을 진행하게 되면 이스포츠 팬들의 여론이 좋지 못할 것입니다. 특수한 사례가 아닌 경우 영리활동 및 부대활동은 정식 이스포츠 선수 계약 이후에 진행하기를 권유합니다.
- 마찬가지로 부속합의서 등으로 영리활동과 부대활동을 합의하더라도 게임단의 공식적인 활동 외에 게임단 간부 및 종사자가 개인적으로 선수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선수에게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 요청이 강요로 비추어 질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계약 위반 사항이 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항

제5조 (게임단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 ① 게임단은 선수에 대하여 이스포츠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게임훈련활동 및 훈련설비(게임훈련을 위한 컴퓨터, 네트워크 시설, 훈련장소 및 훈련시간대의 숙식을 포함한다)를 제공하며, 이 계약에 따른 훈련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게임단은 게임종목사의 규정이 이를 인정할 경우 정식선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육성군선수를 1회에 한해 이스포츠대회에 참가시킬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선수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게임단은 선수가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통해 기량을 발휘하고 잠재력을 어필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게임단은 선수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1. 허용되지 않는 경기력 향상 약물의 복용
 2. 승부조작, 이스포츠 관련 도박, 어뷰징(고의패배 등 인위적 승점조작), 대리게임 등과 같이 경기 및 이스포츠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3. 기타 선수 개인과 게임단의 품위 훼손 등 이스포츠 관련 종사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해설

- 이스포츠 선수의 경우 후원금 계약을 하게 되어 있으나, 육성군 선수는 그렇지 못한 경우 기본적인 훈련환경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육성군 선수를 대회에 참여시킬 수 있으나 이때 발생한 선수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대회참여 후 이스포츠 선수 계약으로 전환하기를 추천합니다. 이는 육성군 선수 계약으로 묶어놓고 선수활동을 시키는 편법행위를 막기 위함이며, 이와 유사한 편법행위 역시 계약의 위반사항이 됩니다.
- 1회의 대회라 함은 1세트 혹은 1게임을 뜻하는 것이 아닌 단발성 대회는 1회, 토너먼트 대회는 해당 토너먼트 종료까지, 리그 혹은 스플릿이라면 해당 리그 혹은 스플릿 등 하나의 경기 묶음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의 대회 중 선수 로스터 및 대회 출전 등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육성군 선수가 1회라도 대회에 나왔을 경우 정식 이스포츠 선수로 계약을 종용하는 취지의 조문으로서, 다만 육성군 선수가 다른 게임단으로 이적해서라도 육성군 선수 생활을 유지하려는 경우 별도 특약을 통해 위 조문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추가 및 변경

해당없음



선수
주안점

- 계약에 따라 게임단은 선수에게 훈련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선수는 이에 성실히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 육성군 선수는 기량을 높여 이스포츠 선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훈련 및 대회와 무관한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게임단
주안점

- ① 항은 훈련활동 및 유관 내용에 대한 지시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조항이 됩니다. 다만 대회 혹은 훈련과 관련이 적은 부당한 형태의 지시는 계약상 위반 사항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조항

제6조 (선수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 ① 선수는 게임단에게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선수는 자신이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대회에 출전할 경우, 게임단에 대해 자신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게임단이 대회종료 전에 이미 선수계약의 체결을 명백히 거절한 경우에는 대회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게임단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 신체적 침해라고 생각되는 경우 게임단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선수는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⑤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 1항의 선수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게임단과 협의되지 않은 선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⑥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허용되지 않는 경기력 향상 약물의 복용
 2. 승부조작, 이스포츠 관련 도박, 어뷰징(고의패배 등 인위적 승점조작), 대리게임 등과 같이 경기 및 이스포츠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3. 기타 선수 개인과 게임단의 품위 훼손 등 이스포츠 관련 종사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⑦ 선수는 계약기간 중 게임단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와 이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게임단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 ⑧ 선수는 선수활동 시 게임단에서 제공 혹은 지시하는 유니폼을 착용 혹은 사용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수 있다.



해설

- 선수의 기본적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 선수활동에 대한 금품 지급 요청, 부당한 행위에 대한 거부, 훈련 및 훈련설비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이 선수의 일반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육성군 선수는 특히 정식 계약 체결없이 대회 참여 등을 제한하여 정식 선수 계약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선수 역시 정당한 대회 참여를 위해서는 게임단에 정식 계약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선수는 대회, 훈련, 영리, 부대 활동에 있어서 게임단과 미리 상의하지 않은 활동이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선수활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게임단과 상의 후 참가 및 활동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다만 개인적인 활동까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⑥의 1.의 약물은 체육진흥법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는 게임단과 선수 사이의 사적 관계이므로 탄력적으로 책임을 묻거나 면책이 가능하도록 조문은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유관기관 등에서 이스포츠의 독자적인 도핑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⑦은 통칭 템퍼링에 관한 내용으로서 본 계약기간 동안에는 다른 게임단 등과 접촉해 선수 계약을 맺거나 이에 대해 논의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입니다.
- 템퍼링은 본인 뿐 아니라 게임단 내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도 계약관련 소식을 전하거나 대신 계약을 진행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됩니다.



추가 및 변경

- ⑥항에서 게임단의 특색이나 종목의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과도하게 선수를 강압하거나 자율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판별될 수 있습니다.



선수
주안점

- 템퍼링, 즉 계약 중간에 다른 게임단 등과 계약을 준비하거나 체결하는 행위는 현대 스포츠계에서 금기시 되는 사항으로 전속 계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입니다. 본인 뿐 아니라 동료 선수들의 계약 관련된 내용도 전달하거나 진행시켜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순간적인 집중력 향상 등에 도움이 된다는 제품이 허용되지 않은 약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제품의 사용은 게임단과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 승부조작과 관련 도박은 고의패배뿐 아니라 퍼스트킬, 첫 아이템 구입, 첫 스킬 사용 등 경기 내의 모든 행위에 해당합니다. 흑여 금전을 제공하고 비밀이 보장된다는 유혹이 있을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되며 게임단 및 법조인과 상담해야 합니다.
- 품위 훼손, 명예 훼손 등은 게임 내부에서의 욕설, 고의적인 방해(트롤링), 차별 및 혐오발언 등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 채팅 한번에 종목사와 게임단의 제지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음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게임단
주안점

현재 게임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니폼 부착 광고 등을 유니폼 착용 조항으로 일반화했습니다.

제7조 (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



조항

- 1 선수가 속한 선수단이 대회에 참여하여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목사나 대회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2 종목사나 대회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계단은 상금 수령액 총액 중 [별지]에서 합의한 비율에 따른 금원을 선수에게 지불한다. 상금을 수령해야 할 선수가 1인이 아닌 경우, 선수들 사이의 분배 비율은 게임단과 선수단이 별도로 정한다.



해설

- 대회 입상시 발생하는 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적으로 종목사가 상금 분배에 대한 조항이 있으면 본 계약 이전에 종목사 약관에 따라야 합니다.
- 종목사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게임단과 선수(혹은 선수들)가 분배 비율을 협의해야 합니다.
- 게임단에서 육성군 선수에게 대회참가를 지시하여 상금을 수령했을 때 그에 대한 금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추가 및 변경

- 종목에 따라 선수 비율 대신 선수단의 비율로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선수단의 상금 비율을 균등하게($1/n$) 분배할지, 균등분배시 참여 선수만 균등분배할지, 로스터에 있었던 선수까지 분배할지 등은 세부적으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수주안점





- 대회 상금은 종목과 게임단에 따라 방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금에 대한 명확한 협의 없이 대회에 참가해 상금을 받게 되면 해당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스포츠 선수 계약 없이 상금이 있는 대회에 출전하기 전에는 상금 분배 계약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상금 분배 부분을 협의하여 서면으로 계약변경을 해야 합니다.



게임단주안점





- 육성군 선수를 대회에 참여시킬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한 조항을 명시적으로 작성하거나 서면협의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불필요한 문제들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스포츠 선수로 계약한 뒤 대회에 출전 시키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8조 (선수의 인성교육 및 건강 지원)

 <p>조항</p>	<p>게임단은 선수가 선수로서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선수에게 선수활동에서 기인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선수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스포츠 선수의 경우 나이가 어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주의한 언행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인성교육을 권유하는 조항입니다. • 선수가 선수생활 중 부상 혹은 질병을 당했을 때 선수활동의 관리자인 게임단이 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p>추가 및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교육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등의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게임단 입단 시 인성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매년 계약 갱신시마다 인성교육을 받는다는 등 부속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p>선수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스포츠 선수는 대회 뿐 아니라 개인방송, 개인훈련, 팬 미팅 등에서도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팬들과 접촉하게 됩니다. 이때 부적절한 행동이나 언행(채팅)을 하게 될 경우 팬들이 이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목사에서 벌금, 출전금지 등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단 및 기타 기관에서 진행하는 인성교육이 선수생활 및 연봉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됩니다. • 육성군 선수 시절부터 이를 습관화해야 하며 게임단에서는 실력뿐 아니라 인성을 함께 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 정당한 선수활동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있을 경우 게임단에 요청해 치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수활동이 아닌 개인적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게임단에게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선수활동 외의 일반 생활, 취미활동 등에서 부상을 당하여 부득이하게 은퇴를 선택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스포츠 선수도 육체적인 능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선수 생활 중에는 부상 및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스포츠 선수의 특성상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움직임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거북목, 허리디스크 등의 질환이 생기기 쉬우므로, 선수 개인의 건강과 선수생명의 연장을 위해 적극적인 건강 관리를 추천합니다



- 선수들의 경우 나이가 어린 경우도 많고, 사회경험도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성인의 기준으로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이나 언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선수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언행은 선수의 손해이기도 하지만 게임단 입장에서도 손해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인성교육을 통해 부적절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선수가 선수활동 중 부상이나 질병에 당하게 될 경우 치료비 지원을 추천합니다.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선수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외적인 게임단 이미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조항</p>	<p>제9조 (비용의 부담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게임단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선수의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2 대회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게임단은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게임단과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단은 선수에게 훈련과 대회 준비를 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 등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조항입니다. 다만 선수의 비용부담 동의하에 훈련 장비 등을 선수가 개별 구입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대회상금에 대한 선수 분배비율이 존재하거나 (기본계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영리활동을 통해 선수가 받아야 할 금품이 있는 경우, 선수는 이에 대해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 금액과 비율의 산정 등 처리 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게임단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p>추가 및 변경</p>	<p>해당없음</p>
 <p>선수 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에 대한 비용은 숙소, 식사, 코칭스텝 비용 등을 뜻합니다. 게임단에서 이와 같은 비용을 선수에게 비용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다만 선수가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간식 등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회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해 선수가 가져가는 비용이 계약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정산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 후원금 등에 대한 내역 등 게임단 일반 경비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p>게임단 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금 및 영리활동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정산내역을 선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조항

제10조 (계약내용의 변경)

이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게임단과 선수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해설

- 기본적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은 문서를 통해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추가 및 변경

해당없음



선수
주안점

게임단에서 기존 계약에서 변경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동의해야 합니다.






구두로 계약된 내용은 추후 증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임단
주안점

기존 계약의 변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면에 의한 선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게임단과 선수의 관계상 강압 혹은 강요에 의해 해당 내용이 선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등에 의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p>조항</p>	<h3 style="background-color: #e0f0e0; padding: 5px;">제11조 (권리 등의 양도)</h3> <p>게임단은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수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선수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이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부양도에는 선수와의 권리의무관계는 양도인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함한다.</p>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의 임대 및 이적이 가능하다는 조항입니다. • 육성군 선수의 경우는 임대나 이적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종목의 특성이나 게임단의 성향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종목사에서 선수의 임대 혹은 이적을 허용했을 때에 한정하며 종목사에서 금지한 경우에는 본 조항은 효력을 잃습니다.
 <p>추가 및 변경</p>	<p>육성군 선수에 대한 임대 및 이적이 필요없다면 삭제가 가능한 조항입니다.</p>
 <p>선수 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와 이적은 선수에게 큰 기회일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선수에게 큰 영향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수의 의향을 확인하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해외로의 이적 등에는 해외 생활 환경, 통역, 계약조건의 유지 등 복잡한 사안들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 육성군 선수의 경우 계약의 해지 후 팀 변경이 더 쉽고 법적으로도 깔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p>게임단 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 협의 없이 구단의 의지로 이적이 가능한 타 스포츠는 해당 리그 내에서의 이적으로 한정합니다. 이 스포츠는 국내 한정된 리그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약이 필요합니다. • 선수의 이적을 위해서는 선수의 대회 출전자리 보장, 게임단의 재정상황 악화 등 선수에게 그에 따른 이유와 혜택을 설명하고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육성군 선수의 경우 계약의 해지 후 팀 변경이 더 쉽고 법적으로도 깔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조항

제12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 ① 게임단 또는 선수가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30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 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위반사항의 시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게임단은 계약기간 중 육성군 선수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육성군 선수가 이스포츠 선수로서 성장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게임단은 육성군 선수의 성장가능성에 관한 평가결과 등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게임단과 선수는 계약상의 내용위반이 없는 경우에도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를 통해 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④ 게임단과 선수는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해설

- 게임단 혹은 선수가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선수의 경우 훈련활동 지시 거부 등, 게임단의 경우 훈련환경 미제공 등)해지를 가능케 하는 조항입니다.
- 손해배상 등의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위반에 대한 시정 조건의 기간이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 사항의 조건과 현실적으로 개선에 필요한 시간은 개별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게임단은 육성군 선수가 이스포츠 선수로서의 잠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훈련에 대한 지원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선수 등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객관적인 평가 혹은 지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 그 외 내용위반이 없이도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배상의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합의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기숙생활 등에서 성폭력, 성희롱 등의 성범죄는 선수와 게임단 임직원 상호간에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인지가 필요합니다.

추가 및 변경

해당없음



선수
주안점

- 해당 조항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된 조항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며 30일의 시간을 소요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선수와 게임단 모두가 신의성실의 원칙(상호간에 계약을 최대한 지키는 것을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 할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 및 해당 기간동안 선수생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를 권유합니다.
- 선수는 육성군 생활을 그만두고 싶을 경우 게임단에 요청해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게임단
주안점

- 해당 조항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된 조항이므로, 조항을 악용하여 임의로 계약을 30일간 불이행해도 괜찮다는 유예조항이 아닙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당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기간을 마련하기 위해 30일의 권리유예를 주는 조항입니다.
- 육성군 선수의 성장가능성이 낮아 더 이상 게임단에서 투자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일정 수준(점수 혹은 랭킹) 도달 등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추후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사법부에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성이 있어야 정당한 계약해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선수와 게임단의 관계는 게임단쪽이 다수의 선수와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약관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같은 상황이라면 게임단보다는 선수측의 불공정한 상황이 크게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13조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등)



조 항

선수가 선수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여 명백히 선수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며, 이 경우에 게임단은 선수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해 설

- 조건에 따르거나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닌 계약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의 계약 종료와 부가적인 계약종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 선수의 경우 선수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약이 자연 종료됨을 뜻합니다.

추가 및 변경

해당없음



선 수
주안점

선수활동 중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은퇴 혹은 선수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이 종료되며, 이때 선수는 게임단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게임단
주안점

선수가 선수활동으로 인해 질병 상해 등 선수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이유로 계약을 종료할 경우 계약이 종료되며, 이때 선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잔여 계약기간에 제공하기로 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게임단 이미지, 선수들 사기 등을 고려하여 잔여 후원금 혹은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선수계약)

- ① 게임단은 선수가 충분히 잠재력과 기량을 증명했다고 판단할 경우, 본 계약의 잔여일과 관계없이 선수와 후원금 등을 협의하여 이스포츠 선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선수가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스포츠대회에 참가한 경우, 육성군 선수의 자격으로는 어떠한 다른 대회에도 재차 참가하지 못한다.
- ③ 게임단과 선수의 이스포츠 선수 계약이 완료됨과 동시에 본 육성군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 육성군에서 정식 이스포츠 선수로 계약하는 통칭 콜업 조항입니다.
- 게임단은 육성군 계약에서 체결한 계약기관과 관계없이 선수와 후원금, 계약기간 등 주요 사항을 협의해 즉시 이스포츠 선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육성군 선수는 대회에 2회 이상 출전할 수 없으므로 2회 이상 출전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을 통해 이스포츠 선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추가 및 변경 해당없음



- 육성군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게임단은 언제든지 정식 이스포츠 선수로 계약할 수 있도록 만든 조항입니다.
- 본 계약서 상으로는 육성군 선수로 대회 참여는 1회로 제한되므로 추가적인 대회 참여 지시가 있으면 정식 이스포츠 선수 계약을 요청해야 합니다.



- 육성군 선수의 테스트 중 충분한 실력이 검증된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이스포츠 선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 육성군 선수의 활용에는 여러 제약이 있으므로 이스포츠 선수로 계약하기를 권유합니다.
- 본 계약서 상으로는 육성군 선수로 대회 참여는 1회로 제한되므로 추가적인 대회 참여 지시가 있으면 정식 이스포츠 선수 계약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15조 (비밀유지)



조항

게임단과 선수는 이 계약의 내용 및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이 비밀유지의 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해설

- 선수와 게임단은 계약을 통해 혹은 계약기간 동안 알게 된 상호간의 비밀 사항을 제3자에게 비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은 상호간의 이익도모라는 계약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추가 및 변경

- 비밀 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게임단 재정상황, 운영상황, 게임 전략, 게임 훈련 방식 등



선수 주안점

- 게임단의 업무상의 비밀이란 재정상황, 운영방침 등 일반적인 회사정보 이외에도 경기의 전략 및 훈련방식 등 게임단에 소속되지 않았다면 몰랐을 모든 정보를 뜻합니다.
- 선수 입장으로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게임단 입장에서는 중요한 정보의 누설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는 해당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 특히 인게임 채팅, 방송중 언급 등 공개적인 상황에서는 보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언급을 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게임단 주안점

- 선수가 계약중 혹은 계약 이후에 게임단을 언급하여 게임단에 피해를 입힐수 있는 상황은 일반적인 조항 사항으로 제약하였으나 종목 혹은 게임단의 특징에 따라 부속합의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선수 비밀이란 계약기간 동안 알게된 선수의 약점 혹은 선수측의 손해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본 조항에서 규약하는 내용입니다.



조항

제16조 (분쟁해결)

-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선수와 게임단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e스포츠 공정위원회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의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결한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해설

- 본 계약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계약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간에 제3자에게 판단을 맡기는 사례들입니다.
- 먼저 e스포츠 중재위원회의 분쟁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1. 중재법에 따른 중재와 2.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즉 1. 중재와 2. 소송은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추가 및 변경

해당없음



선수
주안점

- 1. 중재의 경우 상대적으로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므로 업계 정보나 통념들이 많이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업계 관행이 사회적으로 이해받기 어려운 경우 2. 소송이 나올 수 있습니다.
- 2. 소송의 경우 업계 관행이 아닌 중립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지만, 소송에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현역 선수에게는 전성기를 소송으로 허비할 수도 있다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 대한 비용 등도 고려해야 될 대상입니다.



게임단
주안점

- 1. 중재의 경우 상대적으로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므로 업계 정보나 통념들이 많이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업계 관행이 사회적으로 이해받기 어려운 경우 2. 소송이 나올 수 있습니다.
- 2. 소송의 경우 업계 관행이 아닌 중립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지만, 소송에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소송에 대한 비용과 행정적인 자원 소모 등도 고려해야 될 대상입니다.



조 항

제17조 (청소년의 보호)

- ① 게임단은 청소년인 선수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
- ② 게임단은 청소년인 선수와 계약할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본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③ 게임단은 청소년인 선수에게 과도한 시간에 걸쳐서 선수활동에 종사하게 할 수 없다.



해 설

- 청소년 부속합의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청소년 선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추가 및 변경

해당없음



선 수 주안점

- 청소년(만19세) 이하의 선수는 계약을 위해서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고 본 계약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보호자의 의사 및 인감 등을 위조하거나 동의없는 사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게임단 주안점

- 청소년(만19세) 이하의 선수는 계약을 위해서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계약의 경우 법적으로 전면 취소가 가능하므로 보호자의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확인은 물론 가능하다면 보호자의 대면 계약을 권유합니다.
-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는 표준약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한 보호자의 동의뿐 아니라, 보호자에게 해당 계약에 대한 설명과 계약 내용에 이해했고 동의했다는 응답을 받기를 권유합니다.



조항

제18조 (부속 합의)

- ① 게임단과 선수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② 제10조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게임단과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해설

-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부속합의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부속합의서는 본 계약의 취지에 벗어나거나 충돌하거나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 계약서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하여 게임단과 선수가 각각 서명날인(도장)한 뒤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에 더해서 계약서 2부를 나란히 놓고 간인을 하기도 합니다.

추가 및 변경

해당없음



선수
주안점

- 계약서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한부당 선수도장 하나, 게임단 도장 하나가 찍혀있어야 하며 각각 한부씩을 나눠가져야 합니다.
- 계약서는 추후 문제 발생시 계약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이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게임단
주안점

- 계약서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한부당 선수도장 하나, 게임단 도장 하나가 찍혀있어야 하며 각각 한부씩을 나눠가져야 합니다.
- 계약서는 추후 문제 발생시 계약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이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04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및 육성군 표준 소속합의서

I 취지






II 조항별 해설 및 가이드






04.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및 육성군 표준 부속합의서

I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및 육성군 표준 부속합의서의 취지

- ☑ 이스포츠는 그 성격의 특성상 이스포츠 선수 및 육성군 선수에 다수의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고, 청소년의 권리는 헌법,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다양한 법에서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 ☑ 이스포츠 선수 및 육성군 선수의 경우는 청소년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종의 특성상 명확하게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및 육성군 선수를 보호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 마찬가지로 이스포츠의 특성상 청소년 보호에 관련된 조항이 오히려 이스포츠 선수활동에 지장을 주게 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셋다운제 등)
- ☑ 이스포츠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청소년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들로서 구체적인 규정조항이라기보다는, 청소년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해야 한다 혹은 해서는 안 된다 수준의 선언적 조항들입니다.
- ☑ 게임단에서는 청소년 부속합의서가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가장 최소한의 요건임을 인지 하고, 게임단에서 자율적으로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및 육성군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를 권유합니다.

II 조항별 해설 및 가이드

 조항	<h3>제1조 (목적)</h3>			<p>이 부속합의서의 목적은 게임단과 청소년 선수 (또는 육성군) 사이에 _____ (이하 ‘주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권익을 보다 명확하게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있다.</p>
 해설	<p>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및 육성군 선수와 게임단이 청소년의 권익에 대해 명확하게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본 부속합의서의 목적임을 명확히 하는 조항입니다.</p>			
 추가 및 변경	 선수 주안점	 게임단 주안점	해당없음	

 조항	<h3>제2조 (적용)</h3>			<p>이 부속 합의서는 별도의 계약을 구성하고 있으며, 주계약 보다 우선 적용된다</p>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계약은 동등한 관계의 계약이지만 청소년에 대한 보호 부속조항이 더 앞선다는 내용입니다. •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본 청소년 부속합의서는 보다 기본적인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 계약에서 이를 침해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 본 부속합의서가 앞서게 됩니다. 			
 추가 및 변경	 선수 주안점	 게임단 주안점	해당없음	

제3조 (청소년의 자유선택권 보장)



조항

선수는 게임단에 대하여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게임단은 선수의 자유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해설

-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울 수 있고, 강압 등에 의해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 게임단은 선수의 자유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며 강압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추가 및 변경

해당없음



선수 주안점





- 청소년 선수는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이것은 청소년 선수가 무엇이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선수 생활 등에 있어서 게임단과 동등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자신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게임단 소속으로 내부 규율등은 지켜야 하지만 의견을 자유로이 제시할 수 있고 부당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게임단 주안점

선수와 게임단은 기숙 생활 및 관리자의 관계로서, 일종의 종속관계 처럼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게임단에서는 청소년 선수들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지만 다만 이 조항이 선수의 규율무시 등 방종을 허용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제4조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p>조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게임단은 선수가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게임단은 선수가 의무교육 외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받을 것을 원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p>해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4월 현재) 교육기본법 8조에서 초등6년, 중등3년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모든 국민이 보유한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선수가 이 권리를 주장할 경우 게임단은 이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p>추가 및 변경</p>	<p>해당없음</p>
 <p>선수 주안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은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의무 교육입니다. 나중에 선수생활 은퇴 이후를 고려하면 최소한의 교육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수 전성기에는 훈련이 학업보다 중요한 시기일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선수의 선택이 됩니다. • 다만 학업을 병행하고 싶은 경우에는 게임단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p>게임단 주안점</p>	<p>청소년 이스포츠 선수가 학업을 병행하고 싶어하면 게임단에서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방해하는 경우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p>



조항

제5조 (청소년의 인격권 보장)

- ① 게임단은 선수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게임단은 선수에게 폭행, 강요, 협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게임단 또는 게임단 소속 임직원(임원은 등기임원을 말하며 직원은 고용형태를 불문한다)이 선수에 대하여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폭력 또는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를 한 경우, 선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 기숙 생활을 하는 게임단은 사실상 청소년의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되므로 청소년의 인격권 보장을 위한 주체적인 대상이 됩니다.
- 게임단 혹은 게임단 소속 임직원이 폭행, 강요, 협박 등 폭력행위나 학대행위를 하게 될 경우 선수는 본 계약 내용과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 및 변경

해당없음



선수 주안점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공포심 조성 또는 해악을 예고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 해당 행위들의 주체는 게임단 혹은 게임단에 소속된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되며, 행위 발생 이후에는 기존 계약조건과 관계없이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 해당 행위들이 발생한 경우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부모님, 경찰, 법조인 등에게 즉시 알리고 상담을 받기를 권유합니다.



게임단 주안점

- 청소년에 대한 폭력행위 등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게임단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수와 접촉하는 게임단 임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등을 실시하기를 권유합니다.
- 선수들과 상시로 생활하는 코칭스태프 뿐 아니라 게임단 소속 임직원 역시 포함되는 내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미리 예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게임단은 아동복지법 상 보호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로서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므로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6조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장)



조항

- ① 게임단은 선수가 「학교보건법」 제7조의 건강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가 정당한 선수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강검사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게임단은 선수가 이에 상응하는 건강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게임단은 필요 시 선수가 심리 건강에 관한 상담 또는 검사 등을 받도록 조치하는 등 선수의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 청소년의 건강 보장을 위한 조항으로 본디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이라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검사입니다.
- 의무교육 기간 중 시행하는 건강검사 때 참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및 변경

해당없음



선수 주안점

- 학교에서 시행하는 정기적인 건강검사에 가급적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게임단 주안점

이스포츠 선수의 경우 운동부족, 과도한 전자기기 사용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정기검진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청소년 뿐 아니라 소속된 이스포츠 선수 전체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권유합니다.

제7조 (청소년의 수면권 및 휴식권 보장)



조항

게임단은 선수가 적절한 휴식과 수면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수활동 조정 등 제반조치를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등 수면권에 대한 보장 내용들이 있습니다.
- 다만 이스포츠와 이스포츠 선수의 특성상 야간 선수활동 금지 등의 조항을 포함할 경우 현실과 맞지 않을 확률이 높아 이에 대한 조항은 배제했습니다.

추가 및 변경

해당없음







선수 주안점

- 청소년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조항입니다.
- 선수활동 중 과도한 활동으로 인해 적절한 휴식과 수면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 부모님 혹은 법조인 등과 상담하기를 추천합니다.



게임단 주안점

- 개인훈련 등을 선수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 다만 게임단에서 강요하거나 강요의 분위기를 조성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는 가급적 8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을 보장해주기를 권장합니다.

제8조 (숙식제공)	
 조 항	게임단은 선수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 제6조, 제7조의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식사, 수면, 휴식은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제6조, 제7조가 선언적인 조항이라면 제8조는 실질적으로 게임단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추가 및 변경	해당없음
 선 수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단에서 숙식을 제공할 경우 선수의 건강과 수면, 휴식을 실질적으로 보장 하라는 내용입니다. • 실질적으로 선수활동중의 식사 및 적절한 휴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부모님 혹은 법조인 등과 상담하기를 추천합니다.
 게임단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선수에게 식사와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이다보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후 관련해 규제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권유합니다.



조 항

제9조 (청소년의 선수활동 제공시간)

- 1 게임단은 아래 <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선수가 선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표> 청소년의 선수활동 제공시간 제한

구분	선수활동 제공시간 제한
15세 미만의 청소년	주당 35시간 이내
15세 이상의 청소년	주당 40시간 이내 * 단, 청소년이 합의할 경우에는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 연장 가능

- 2 국외 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표>에 따른 선수활동 제공시간에 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게임단은 제4조 및 제7조에 의한 선수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 설

- 선수활동 제공시간의 제한은 현재 게임단이 대회 참가 등의 선수활동시간(자율연습시간은 포함하지 않음)이 주당 35~40시간에 달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다만 추후 대회활동, 영리활동을 통한 BM이 활성화 될 경우를 대비하여 주당 활동시간의 제공시간 상한을 정하였습니다.
- 다른 청소년 관련 계약서 등에서는 야간활동제공금지 등의 조항이 있으나 이 스포츠의 현실과는 맞지 않아 배제하였습니다.

추가 및 변경

해당없음







선 수 주안점

- 대회 참여, 영리활동 등을 과도하게 지시할 수 없는 조항입니다. 다만 이 스포츠의 특성상 자율 훈련 및 연습이 이 시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게임단 주안점

- 대회 참여, 영리활동 등을 과도하게 지시할 수 없는 조항입니다. 다만 이 스포츠의 특성상 자율 훈련 및 연습이 이 시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제10조 (청소년에게 금지된 행위 및 청소년 출입금지 장소)	
 조 항	<p>선수는 음주·흡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p>
 해 설	<p>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 금지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p>
추가 및 변경	<p>해당없음</p>
 선 수 주안점	<p>프로 선수라 해도 청소년으로서 음주 흡연 등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금지된 장소에 출입해서는 안됩니다.</p>
 게임단 주안점	<p>청소년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방조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게 해서는 안됩니다.</p>

제11조 (승부조작 등의 강요금지)



조항

게임단은 선수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강요 내지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 1 허용되지 않는 경기력 향상 약물의 복용
- 2 승부조작, 이스포츠 관련 도박, 어뷰징(고의패배 등 인위적 승점조작), 대리 게임 등과 같이 경기 및 이스포츠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 3 기타 선수 개인과 게임단의 품위 훼손 등 이스포츠 관련 종사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해설

- 청소년은 약물, 승부조작, 이스포츠 관련 도박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해당 사항이 잘못된 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게임단에서는 청소년이 이와 같은 행위를 강요 혹은 권유해서는 안됩니다.

추가 및 변경

해당없음



선수 주안점

- 약물, 승부조작, 이스포츠 관련 도박은 선수로서도 해서는 안되는 일들이지만 특히 게임단 혹은 제3자 등으로부터 권유받았을 때 이에 따르면 안됩니다.
- 승부조작과 관련된 도박은 고의패배뿐 아니라 퍼스트킬, 첫 아이템 구입, 첫 스킬 사용 등 경기 내의 모든 행위에 해당합니다. 혹여 금전을 제공하고 비밀이 보장된다는 유혹이 있을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되며 게임단 및 법조인과 상담해야 합니다.



게임단 주안점

- 약물, 승부조작, 이스포츠 관련 도박은 선수로서도 해서는 안되는 일들이지만 게임단 및 종사자 등에서 권유 내지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 게임단에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프로 선수 교양교육 등을 시행하기를 권유합니다.어야 합니다.



조항

제12조 (청소년 법정대리인의 권한 등)

- ① 선수의 법정대리인은 게임단이 선수를 대리하여 체결한 선수활동 계약의 내용 및 관련 일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게임단은 선수의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선수의 법정대리인은 주계약에 따른 게임단의 활동(교육활동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수의 법정대리인은 미리 선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선수의 법정대리인은 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분배 등 게임단이 선수에게 금품을 정산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게임단에게 관련 정산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게임단은 선수의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게임단이 선수에게 주계약 및 이 부속합의서의 위반사항 시정 요구 및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경우에는 선수의 법정대리인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청소년 선수의 법정 대리인의 권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추가 및 변경

해당없음



선수
주안점

- 청소년 기간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 많은 일들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후 성인이 되면 해당 행위들을 직접 책임져야 하므로 관련 내용들의 진행에 참여하는 것도 추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믿을만한 법정대리인이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대행을 해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회 및 훈련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수도 있습니다



게임단
주안점

청소년의 경우 본인이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법정대리인과 직접 상기 내용 및 관련 계약들을 확인하기를 권유합니다.

제13조 (계약의 실효)



조 항

이 합의서는 선수가 만 19세가 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해 설

본 계약은 선수가 청소년 지위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추가 및
변 경



선 수
주안점



게임단
주안점

해당없음



05

부록

- I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 II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 III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

05. 부록

I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이스포츠 게임단] (이하 '게임단' 이라 한다)[와, 과]
[이스포츠 선수] (이하 '선수' 이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이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를 이행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선수가 이스포츠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하고 게임단은 이에 대한 대가로 후원금 등 금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권리 및 의무를 정하고, 게임단과 선수 상호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①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1호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뜻한다.
- ② “종목사”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종목선정 기관에 의해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에 따라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된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혹은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 및 제2조1항에 의거해 이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 혹은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를 뜻한다.
- ③ “대회” 및 “대회주최자”란 종목사 혹은 종목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가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되어있는 게임물 및 이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임물을 통해 경기를 주최하는 행위와 해당 행위의 주체를 뜻한다.

④ “게임단”이란 종목사 등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스포츠 선수를 모집하여, 이스포츠 선수에게 각종 환경과 관리를 제공하는 주체를 뜻한다.

⑤ “이스포츠 선수”란 종목사 등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게임단에 소속되어 경기에 출전하는 주체를 뜻한다.

제3조(계약 기간 및 적용범위)

① 계약의 기간은 _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_년 __월 __일까지 _____일간으로 한다.

②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상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되지 않은 게임물에 관하여 이 계약서 제2조의 각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계약서의 내용을 적용한다.

③ 종목사가 대회 규정, 게임단 최소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약관 혹은 계약을 규정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혹은 계약이 우선한다.

제4조(선수활동의 범위)

① 선수의 선수활동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게임단과 약정한 각종 이스포츠 대회참가
2. 게임단과 약정한 훈련참가
3. 게임단과 약정한 스트리밍, 광고 및 미디어 출연, 콘텐츠 제작 등 영리활동
4. 게임단과 약정한 게임단 운영의 부대활동. 단 게임단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 게임단의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선수활동 범위는 게임단과 선수가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게임단의
일반적 권리 및 의
무 등)**

- ① 게임단은 선수에 대하여 제4조 제1항의 선수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게임단은 선수에게 선수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후원금,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그 외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구성된다.
- ③ 게임단은 선수가 경기와 대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게임단은 선수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1. 허용되지 않는 경기력 향상 약물의 복용
 2. 승부조작, 이스포츠 관련 도박, 어뷰징(고의패배 등 인위적 승점조작), 대리게임 등과 같이 경기 및 이스포츠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3. 기타 선수 개인과 게임단의 품위 훼손 등 이스포츠 관련 종사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6조(선수의 일
반적 권리 및 의무
등)**

- ① 선수는 게임단에게 약정된 후원금,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게임단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 신체적 침해라고 생각되는 경우 게임단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선수는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1항의 선수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게임단과 협의되지 않은 선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허용되지 않는 경기력 향상 약물의 복용
2. 승부조작, 이스포츠 관련 도박, 어뷰징(고의패배 등 인위적 승점조작), 대리게임 등과 같이 경기 및 이스포츠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3. 기타 선수 개인과 게임단의 품위 훼손 등 이스포츠 관련 종사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⑥ 선수는 계약기간 중 게임단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와 이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게임단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⑦ 선수는 선수활동 시 게임단에서 제공 혹은 지시하는 유니폼을 착용 혹은 사용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후원금)

① 게임단은 본 계약기간 동안 선수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별지]에서 합의한 후원금을 지급한다. 게임단과 선수는 후원금의 액수, 조건부 후원금지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 후원금이 복수의 지급사유로 구성될 경우의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② 게임단은 선수에게 후원금을 [별지]에서 정한 지급일에 균등·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건부 후원금지급이나 지급사유가 다른 후원금은 각 조건이나 지급사유를 기준으로 하여 균등·분할 지급한다.

제8조(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

① 선수가 속한 선수단이 대회에 참여하여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목사나 대회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종목사나 대회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게임단은 상금 수령액 총액 중 [별지]에서 합의한 비율에 따른 금액을 선수에게 지불한다. 상금을 수령해야 할 선수가 1인이 아닌 경우, 선수들 사이의 분배 비율은 게임단과 선수단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영리활동)

영리활동의 직접적인 대가로 게임단이 수익을 얻는 경우, 게임단과 선수는 그 수익에 대하여도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제10조(선수의 인성교육 및 건강 지원)

게임단은 선수가 선수로서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선수에게 선수활동에서 기인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 견될 경우 선수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용의 부담 등)

① 게임단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선수의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대회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게임단은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게임단과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2조(지식재산권 등)

① 게임단은 계약기간 중 선수와 관련하여 게임단이 선수의 본명, 게임상의 지칭명(ID 혹은 닉네임)을 포함한 선수의 모든 가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선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게임단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선수의 선수활동 또는 게임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게임단과 선수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게임단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게임단이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로부터 허락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게임단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게임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수의 명예나 기타 선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3조(계약내용의 변경)

이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게임단과 선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 14조(권리 등의 양도)

게임단은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수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선수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이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부양도에는 선수와의 권리의 무관계는 양도인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함한다.

제 1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게임단 또는 선수가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30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위반사항의 시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게임단과 선수는 계약상의 내용위반이 없는 경우에도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를 통해 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게임단과 선수는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6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선수가 선수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명백히 선수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된다. 단 게임단은 선수에게 잔여 후원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게임단과 선수는 이 계약의 내용 및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18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선수와 게임단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e스포츠 공정위원회의 분쟁 해결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의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결한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제19조(청소년의 보호)

① 게임단은 청소년인 선수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

② 게임단은 청소년인 선수와 계약할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본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게임단은 청소년인 선수에게 과도한 시간에 걸쳐서 선수활동에 종사하게 할 수 없다.

제20조(부속 합의)

① 게임단과 선수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3조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게임단과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게임단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선수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선수의 법정대리인(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선수와의 관계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첨 부>

1. 부속 합의서

[별지]

1. 계약의 금액은 연간 일금 _____(한글) _____ 원
(₩ (숫자))으로 하고, 그 지급방법은 게임단이
매월 _____일 _____(한글) _____ 원 (₩ (숫자))
을 선수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회의 상금은 게임단과 선수가 각각

게임단 _____%
선수 _____%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II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이스포츠 게임단] (이하 '게임단' 이라 한다)[와, 과]
[이스포츠 선수] (이하 '선수' 이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이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를 이행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선수가 이스포츠 선수로서의 잠재력과 기량을 증명하고, 게임단은 이스포츠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선수와 우선적인 선수계약을 할 기회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의무를 정하여, 게임단과 선수 상호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1호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뜻한다.

② “종목사”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종목선정 기관에 의해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에 따라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된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혹은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 및 제2조1항에 의거해 이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 혹은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를 뜻한다.

③ “대회” 및 “대회주최자”란 종목사 혹은 종목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체가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되어있는 게임물 및 이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임물을 통해 경기를 주최하는 행위와 해당 행위의 주체를 뜻한다.

④ “게임단”이란 종목사 등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스포츠 선수를 모집하여, 이스포츠 선수에게 각종 환경과 관리를 제공하는 주체를 뜻한다.

⑤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란 이스포츠 선수가 되기 위해 게임단에 속해 훈련 등을 수행하는 주체를 뜻한다.

제 3조(계약 기간 및 적용범위)

- ① 계약의 기간은 _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_년 __월 __일까지 _____일간으로 한다.
- ②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상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되지 않은 게임물에 관하여 이 계약서 제2조의 각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계약서의 내용을 적용한다.
- ③ 종목사가 대회 규정, 게임단 최소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약관 혹은 계약을 규정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혹은 계약이 우선한다.

제4조(선수활동의 범위)

- ① 선수의 선수활동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 1. 게임단과 약정한 훈련참가
 - 2. 게임단과 약정한 각종 이스포츠 대회참가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선수활동 범위는 게임단과 선수가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5 조 (게임 단 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등)

- ① 게임단은 선수에 대하여 이스포츠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게임훈련활동 및 훈련설비(게임훈련을 위한 컴퓨터, 네트워크시설, 훈련장소 및 훈련시간대의 숙식을 포함한다)를 제공하며, 이 계약에 따른 연습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게임단은 게임종목사의 규정이 이를 인정할 경우 정식선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육성군 선수를 1회에 한해 이스포츠대회에 참가시킬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선수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게임단은 선수가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통해 기량을 발휘하고 잠재력을 어필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게임단은 선수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1. 허용되지 않는 경기력 향상 약물의 복용
2. 승부조작, 이스포츠 관련 도박, 어뷰징(고의패배 등 인위적 승점 조작), 대리게임 등과 같이 경기 및 이스포츠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3. 기타 선수 개인과 게임단의 품위 훼손 등 이스포츠 관련 종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6조(선수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 ① 선수는 게임단에게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선수는 자신이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대회에 출전할 경우, 게임단에 대해 자신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게임단이 대회종료 전에 이미 선수계약의 체결을 명백히 거절한 경우에는 대회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게임단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 신체적 침해라고 생각되는 경우 게임단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선수는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⑤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 1항의 선수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게임단과 협의되지 않은 선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⑥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허용되지 않는 경기력 향상 약물의 복용
2. 승부조작, 이스포츠 관련 도박, 어뷰징(고의패배 등 인위적 승점 조작), 대리게임 등과 같이 경기 및 이스포츠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3. 기타 선수 개인과 게임단의 품위 훼손 등 이스포츠 관련 종사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⑦ 선수는 계약기간 중 게임단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와 이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게임단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⑧ 선수는 선수활동 시 게임단에서 제공 혹은 지시하는 유니폼을 착용 혹은 사용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

① 선수가 속한 선수단이 대회에 참여하여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목사나 대회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종목사나 대회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게임단은 상금 수령액 총액 중 [별지]에서 합의한 비율에 따른 금액을 선수에게 지불한다. 상금을 수령해야 할 선수가 1인이 아닌 경우, 선수들 사이의 분배 비율은 게임단과 선수단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선수의 인성교육 및 건강 지원)

게임단은 선수가 선수로서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선수에게 선수활동에서 기인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선수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부담 등)

① 게임단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선수의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대회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게임단은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게임단과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이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게임단과 선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1조(권리 등의 양도)

게임단은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수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선수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이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부양도에는 선수와의 권리의무관계는 양도인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함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게임단 또는 선수가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30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위반사항의 시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게임단은 계약기간 중 육성군 선수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육성군 선수가 이스포츠 선수로서 성장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게임단은 육성군 선수의 성장가능성에 관한 평가결과 등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게임단과 선수는 계약상의 내용위반이 없는 경우에도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를 통해 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게임단과 선수는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등)

선수가 선수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명백히 선수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며, 이 경우에 게임단은 선수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선수계약)

① 게임단은 선수가 충분히 잠재력과 기량을 증명했다고 판단할 경우, 본 계약의 잔여일과 관계없이 선수와 후원금 등을 협의하여 이스포츠 선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선수가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스포츠대회에 참가한 경우, 육성군 선수의 자격으로는 어떠한 다른 대회에도 재차 참가하지 못한다.

③ 게임단과 선수의 이스포츠 선수 계약이 완료됨과 동시에 본 육성군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 15조(비밀유지)

게임단과 선수는 이 계약의 내용 및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 16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선수와 게임단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이스포츠 공정위원회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의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결한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제 17조(청소년의 보호)

① 게임단은 청소년인 선수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

② 게임단은 청소년인 선수와 계약할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본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게임단은 청소년인 선수에게 과도한 시간에 걸쳐서 선수활동에 종사하게 할 수 없다.

제18조(부속 합의)

① 게임단과 선수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게임단과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게임단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선수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선수의 법정대리인(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선수와 관계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첨부〉

1. 부속 합의서

[별지]

1. 계약의 금액은 연간 일금 _____(한글) _____ 원
(₩ _____ (숫자) _____)으로 하고, 그 지급방법은 게임단이
매월 _____일 _____(한글) _____ 원 (₩ _____ (숫자))
을 선수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 대회 상금은 게임단과 선수가 각각

게임단 _____%

선수 _____%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III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

[이스포츠 게임단] (이하 '게임단' 이라 한다)[와, 과]
[이스포츠 선수] (이하 '선수' 이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를 이행한다.

제1조(목적)

이 부속합의서의 목적은 게임단과 청소년 선수 (또는 육성군) 사이에 _____ (이하 '주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권익을 보다 명확하게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있다.

제2조(적용)

이 부속 합의서는 별도의 계약을 구성하고 있으며, 주계약 보다 우선 적용된다.

제3조(청소년의 자유선택권 보장)

선수는 게임단에 대하여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게임단은 선수의 자유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 ① 게임단은 선수가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게임단은 선수가 의무교육 외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받을 것을 원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의 인격권 보장)

- ① 게임단은 선수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게임단은 선수에게 폭행, 강요, 협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게임단 또는 게임단 소속 임직원(임원은 등기임원을 말하며 직원은 고용형태를 불문한다)이 선수에 대하여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폭력 또는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를 한 경우, 선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 조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장)

① 게임단은 선수가 「학교보건법」 제7조의 건강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가 정당한 선수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강검사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게임단은 선수가 이에 상응하는 건강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게임단은 필요 시 선수가 심리 건강에 관한 상담 또는 검사 등을 받도록 조치하는 등 선수의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조 (청소년의 수면권 및 휴식권 보장)

게임단은 선수가 적절한 휴식과 수면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수활동 조정 등 제반조치를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 8 조 (숙식제공)

게임단은 선수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 제6조, 제7조의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9 조 (청소년의 선수활동 제공시간)

게임단은 선수가 적절한 휴식과 수면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수활동 조정 등 제반조치를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표〉 청소년의 선수활동 제공시간 제한

구분	선수활동 제공시간 제한
15세 미만의 청소년	주당 35시간 이내
15세 이상의 청소년	주당 40시간 이내 * 단, 청소년이 합의할 경우에는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 연장 가능

② 국외 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표〉에 따른 선수활동 제공시간에 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게임단은 제4조 및 제7조에 의한 선수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청소년에게 금지된 행위 및 청소년 출입금지 장소)

선수는 음주·흡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승부조작 등의 강요금지)

게임단은 선수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강요 내지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 ① 허용되지 않는 경기력 향상 약물의 복용
- ② 승부조작, 이스포츠 관련 도박, 어뷰징(고의패배 등 인위적 승점조작), 대리게임 등과 같이 경기 및 이스포츠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 ③ 기타 선수 개인과 게임단의 품위 훼손 등 이스포츠 관련 종사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2조(청소년 법정대리인의 권한 등)

① 선수의 법정대리인은 게임단이 선수를 대리하여 체결한 선수활동 계약의 내용 및 관련 일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게임단은 선수의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선수의 법정대리인은 주계약에 따른 게임단의 활동(교육활동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수의 법정대리인은 미리 선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선수의 법정대리인은 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분배 등 게임단이 선수에게 금품을 정산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게임단에게 관련 정산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게임단은 선수의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게임단이 선수에게 주계약 및 이 부속합의서의 위반사항 시정 요구 및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경우에는 선수의 법정대리인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실효)

이 합의서는 선수가 만 19세가 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계약체결 일시 : 년 월 일
계약체결 장소 :

게임단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선수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선수의 법정대리인(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선수와의 관계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본 지침서는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의 일부입니다.
전체 연구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kocca.kr)
콘텐츠지식-연구보고서에서 PDF 파일을 내려받기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0년 11월
발행처 한국콘텐츠진흥원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351)
대표전화 1566-1114
홈페이지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